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상명대학교(이하 '상명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상명대 재학생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IITP에게 위탁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명대 재학생의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IITP에게 위탁하고, IITP는 이를 승낙하여 IITP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IITP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명대가 요청하는 재학생의 TOPCIT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 접수 및 접수자DB 생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합 및 처리
(응시자 이름, 소속 기업 및 부서, 전화번호, TOPCIT 웹사이트 ID)
2. 응시자DB 생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응시자 이름, 수험번호)
3. TOPCIT결과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응시자 이름, 수험번호, 모듈별 점수 및 총점)

제4조 (위탁 기간) IITP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TOPCIT 결과 유효기간인 2년간 보존하며, 그 이전이라도 응시자 개인 또는 상명대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즉시 폐기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IITP는 한국생산성본부에 한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상명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또한, IITP가 재위탁을 위해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IITP는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상명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IITP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IITP가 상명대 재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처리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서에 명시된 위탁 기간은 물론 기간 만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이용이 불가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2. IITP는 명시된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고, 상명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상명대는 IITP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관리사항 : ①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②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③ 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④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⑤ 그 밖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상명대는 IITP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IITP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상명대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IITP를 교육할 수 있으며, IITP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명대는 IITP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수탁자인 IITP는 다음의 사항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IITP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IITP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명대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배상한 경우에는 상명대가 이를 IITP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명대학교'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원장 석 제 문 (인)



상명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총장 백 응 기 (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상명대학교(이하 '상명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상명대 재학생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IITP에게 위탁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명대 재학생의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IITP에게 위탁하고, IITP는 이를 승낙하여 IITP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IITP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명대가 요청하는 재학생의 TOPCIT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 접수 및 접수자DB 생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합 및 처리
(응시자 이름, 소속 기업 및 부서, 전화번호, TOPCIT 웹사이트 ID)
2. 응시자DB 생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응시자 이름, 수험번호)
3. TOPCIT결과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응시자 이름, 수험번호, 모듈별 점수 및 총점)

제4조 (위탁 기간) IITP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TOPCIT 결과 유효기간인 2년간 보존하며, 그 이전이라도 응시자 개인 또는 상명대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즉시 폐기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IITP는 한국생산성본부에 한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상명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또한, IITP가 재위탁을 위해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IITP는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상명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IITP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IITP가 상명대 재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처리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서에 명시된 위탁 기간은 물론 기간 만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이용이 불가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2. ITP는 명시된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고, 상명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상명대는 ITP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관리사항 : ①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②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③ 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④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⑤ 그 밖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상명대는 ITP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ITP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상명대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ITP를 교육할 수 있으며, ITP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명대는 ITP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수탁자인 ITP는 다음의 사항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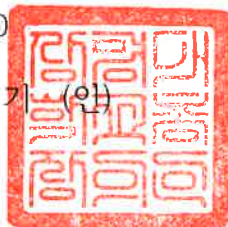
1. ITP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ITP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명대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배상한 경우에는 상명대가 이를 ITP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명대학교'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상명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총장 백 응 기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원장 석 제 범 (인)

